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. 11. 27 선고 2018가단472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6. H

변 론 종결 2018. 11. 13

판 결선고 2018. 11. 27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와 2004. 2. 23. 접수 제541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4. 2. 5. 망 1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와 사이에 40,000,000원을 변제기 는 2005년 3월 5.일, 이자는 월 법정이 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40,000,000원을 대여하였다. 나.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에 관하여 2004. 2. 23. '등 기원인:2004년 2월 23.일 설정계약,채권 최고액:40,000,000원, 근저당권자 망인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*라 한다)를 마쳤다. 다. 망인은 사망하였고,그 상속인들로는 피고들이 있다.

[인정근거] - 피고 C, F, G, H :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- 피고 D,E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므로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,가사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변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3. 판단

가.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

이 사건 부동산에 망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로된 사실,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04. 2. 5.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 바,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,달리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.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 권인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5. 3. 5.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,

다. 소결론

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박성 경

별지